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가단5078215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한화건설

피고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7. 7. 5.

판결 선고2017.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64,910원 및 그 중 105,303,234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38,361,676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각 2017. 9. 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350,775원 및 그 중 105,303,342원에 대하여는 2014. 5. 6.부터, 51,047,433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도급관계

원고는 2011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송파위례 A1-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삼학(이하 '삼학'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 원고는 2012. 3. 2. 삼학과, 삼학에게 위 송파위례 A1-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중 '방수공사 1, 2 공구'를 방수공사 1공구의 계약금액은 630,332,342원, 방수공사 2공구의 계약금액은 422,700,000원, 공사기간은 각 2012. 3. 2.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로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원고와 삼학은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제9조).

2) 피고는 2012. 3. 5. 삼학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사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보증약관 제1조)는 내용의 각 계약보증계약(방수공사 1공구 보증금액은 63,033,234원이고 방수공사 2공구 보증금액은 42,270,000원으로서 각 계약금액의 10%이고, 보증기간은 각 위 공사기간과 같다)을 체결하고, 그 각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그런데 삼학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5. 삼학과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위 각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각 계약보증금의 합계 105,303,23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경안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안'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 1) 원고는 2011. 10. 1. 경안과, 경안에게 송파위례 A1-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은 13,354,672,500원, 공사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6. 30.까지이다).
- 2) 피고는 2012. 1. 3. 경안이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보증금액은 1,30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2. 1. 3.부터 2012. 12. 31.까지이다)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경안에게 선급금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 그런데 경안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 1. 경안과의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3. 11. 15. 피고에게, 미지급 기성금을 공제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선급금이 375,835,000원이라는 이유로 같은 금액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4)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한 미회수 선급금 375,835,000원에서 물가변동비 65,580,696원을 공제하면 310,254,304원이 된다1).
- 5)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으로 2015. 12. 30. 243,522,230원을, 2016. 4. 1. 55,379,254원을 각 지급하였다.
- 6) 한편 원고는 경안에게 지급한 1,3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523,320원을 매입 부가가치세액으로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삼학과 관련한 청구에 관하여

가.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삼학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삼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어 피고의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피고의 보증금액 한도 내로서 위 각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합계의 10%인 105,303,234[= (630,332,342+422,700,000)×0.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실제 손해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위약금 약정이 기재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위 각 계약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도 위약금 약정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피고는 위약금 약정에 구속되지 않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삼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서나 보증금에 관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의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약금 약정이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계약보증계약 체결 당시 삼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는 공인인증을 통하여 체결한 전자계약서로서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에 부가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 하는 다른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위 각 계약보증계약 체결 당시나 계약보증금 청구를 받을 때에도 위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약관 제1조에서 계약보증계약의 경우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계약보증계약이 취소되는 등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따라 보증금액 액수가 정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호에서 '삼학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고가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 배포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인데 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위 각 하도급공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호의 내용도 위약금 약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기재된 위약금 약정 역시 위와 같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호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피고의 보증기간은 2013. 9. 17.까지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보증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삼학과 관련한 위 각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2013. 9. 17.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16. 4. 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등),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 4. 16. 피고에게 삼학과 관련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7, 20 내지 2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대해 2014. 4. 29., 2014. 5. 27. 및 2015. 1. 20. 원고에게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5. 6. 10. 재차 피고에게 삼학과 관련한 보증금을 포함한 여러 선급금 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의 지급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7. 3. '지점에서 본사로 업무이관 등 피고 내부사정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며, 조속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최종적으로 2015. 11. 4. 삼학과 관련하여 지급예상금액은 19,523,634원(1공구)과 30,061,300원(2공구)라는 보상심사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 청구는 최고에 해당하고, 그 때부터 피고가 최종적으로 보상심사결과를 회신한 2015. 11. 4.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삼학의 원고에 대한 55,178,300원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계약보증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삼학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없이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는 삼학에 관한 계약보증금 청구일인 2014. 4. 16.부터 우편송달에 필요한 3일 및 심사에 필요한 14일이 경과한 2014. 5. 6.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계약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와 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 아래 표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삼학과 관련한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삼학과 체결한 위 각 하도급계약서는 첨부하였으면서도 그 각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된 위약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그 계약관련서류(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타절서류(발송문서 및 타절내역서 등), 기성금 지급관련서류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 5. 27. 및 2015. 1. 30. 위 자료들의 제출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최초에 제출한 자료들 이외에는 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9.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전까지도 실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다가, 2016. 9. 7. 열린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실제 손해가 아닌 위약금 약정에 근거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비로소 위약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4.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은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증금의 지급)

①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인정사실과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9. 7. 열린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심사에 필요한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보증약관에 따라 그 때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한편 보증사고와

관련한 조사기간, 보증금액 결정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및 피고도 위약금 약정이 있는 이상 실제 손해액은 산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약관에는 보증금을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고 보완 서류를 제출받은 후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한 2016. 9. 7.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9. 23.이 된다.

3. 경안과 관련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경안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경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선급금반환 보증금 310,254,304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일인 2013. 11. 15.부터 22일(① 우편송달에 필요한 기간 3일 + ② 보증금 심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 14일 + ③ 보증약관상 지급기한 5일)이 경과한 2013. 12. 4.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 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일부의 돈만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돈을 위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 충당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원금 51,570,753원이 남게 되고, 위 원금 51,570,753원에서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523,320원을 공제하면 결국 51,047,43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47,4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선급금반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와 경안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경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한 선급금반환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탁금의 계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안의 채권자인 A, B의 각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10,690,290원을 공탁하였음을 내세워 미회수 선급금을 계산하면서 부당하게 위 공탁금을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미회수 선급금이 위 공탁금만큼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탁으로 인하여 미지급 기성금 채권이 공탁금만큼 소멸하였으므로 공탁금은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룬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선급금에 관한 보증약관(을 제3호증의 2)에는 보증금의 지급한도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 선급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지급 기성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총기성고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기성금을 의미한다. 원고가 경안에게 선급금 1,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경안이 미지급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잔액은 모두 위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될 무렵(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가압류결정은 원고에게 2012. 6. 22. 및 2012. 8. 3.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인 2012. 8. 1. 경안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의 경안에 대한 선급금 지급약정 등 선급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잔액이 위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위 가압류권자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피압류채권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두 선급금에 충당되어 소멸된 미지급 기성금 채권이 추가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은 미지급 기성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원고가 구하는 금액에서 위 공탁금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가 2013. 11. 15. 피고에게 경안과 관련한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5. 최초로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되었고, 이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 29.경 비로소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최초 보증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2015. 1. 29. 피고에게 경안과 관련하여 'ESC 관련 발주처 승인공문 사본'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11. 15. 위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선급금 보증서, 선급금 일부 포기 공문, 계약해지 공문, 강강안 계약서 및 내역서, 시정 및 선급금 지급현황, 선급금 지급 세금계산서, 외주 기성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기성 지급 지급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지급 독촉에 대하여 2015. 7. 3. 원고에게 '귀사에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 청구 관련하여 지점에서 본사로 업무이관 등 조합 내부사정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리며, 조속한 심사 및 귀사간 원만한 협의로 당월 중으로 전건을 종결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점, 원고가 제출한 'ESC 관련 발주처 승인공문 사본'이 경안과 관련한 선급금 보증금의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의 최초 청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보증사고와 관련한 조사기간,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필요한 기간은 원고의 청구가 송달되는 데에 필요한 3일, 심사 및 결정에 필요한 1개월, 그로부터 위 약관에 따라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5일 합계 1개월 8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8일이 경과한 2013. 12. 24.이 된다.

마. 변제충당 등

위 해지 당시의 선급금 보증금의 원금은 299,564,014원(=310,254,304 -10,690,290)원이 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으로 2015. 12. 30. 243,522,230원을, 2016. 4. 1. 55,379,25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원금에 순차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38,361,676원이 된다.

〈충당액 계산〉

16.12.30	243,522,230	299,564,014	6.00	13.12.24	16.12.30	58,291,443	58,291,443	58,291,443	185,230,787	205,007,737	-
18.04.01	55,379,254	82,883,227	6.00	16.12.31	18.04.01	1,407,703	1,407,703	1,407,703	53,971,551	38,381,676	-

〈발생이자 계산 근거〉

- 1) $299,564,014 \times 0.06 \times 247/365$ (< 13.12.24 ~ 15.12.30 (0%) >)
- 2) $205,007,737 \times 0.06 \times 388/365$ (< 15.12.31 ~ 18.04.01 (6%) >)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3,664,910원(=삼학과 관련한 보증금 105,303,234원 + 경안과 관련한 보증금 38,361,676원) 및 그 중 105,303,234원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6. 9. 23.부터, 38,361,676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문성

- 1) 물가변동비를 공제한 후의 액수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